

의정부지방법원 2021. 6. 23 선고 2019가단23190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재판경과

의정부지방법원 2022. 5. 26 선고 2021나213188 판결

의정부지방법원 2021. 6. 23 선고 2019가단23190 판결

전 문

원고(선정당사자)A

원고보조참가인B

피고C

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영재, 박은경

변론 종결 2021. 4. 28.

판결 선고 2021. 6. 23.

주 문

1. 원고(선정당사자)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(선정당사자)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, 나머지는 원고(선정당사자)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는 2013. 1. 1.부터 원고(선정당사자, 이하 '원고'라고만 한다)와 선정자 D, E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도로 중 각 1/9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할 때까지 원고, 선정자 D, E에게 각 1,800,000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와 선정자 D, E, 원고 보조참가인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도로(이하 '이 사건 각 도로'라 한다) 중 각 1/9 지분을 강제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공유자이고, 피고는 서울 용산구 F 토지 및 위 지상 2층 주택(이하 '이 사건 주택'이라 한다)의 소유자이다.

나. 이 사건 각 도로와 위 F 토지는 다음과 같이 인접하여 있다.

DOCUMENT: 이 사건 각 도로와 F 토지의 인접 현황 도면(이미지 생략)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3, 4호증, 을 제4, 5, 8호증(이하 각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의 주장

피고는 1989. 12. 22.부터 2001. 6. 12.까지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각 도로를 출입도로로 점유·사용하였고, 그 이후 이 사건 주택의 임차인이 이 사건 각 도로를 출입도로로 점유·사용하고 있다. 원고와 선정자, 원고 보조참가인은 2012. 9. 11.부터 이 사건 각 도로를 소유하였는바, 피고에게 2013. 1. 1.부터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다.

3. 판단

가. 토지의 원소유자가 토지의 일부를 도로부지로 무상제공함으로써 그에 대한 독점적·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이에 따라 주민들이 그 토지를 무상으로 통행하게 된 후에 그 토지의 소유권을

경매, 매매, 대물변제 등에 의하여 특정승계한 사람은 그와 같은 사용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, 그 도로로 제공된 토지 부분에 대하여 독점적·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(대법원 2013. 5. 9. 선고 2012다204525 판결 등 참조).

나.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, 이 사건 각 도로의 원소유자인 G은 이 사건 각 도로를 사실상 인근 주민들과 일반인 등을 위한 통로로 제공하여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, 원고와 선정자들 역시 이를 승계취득한 것이므로, 이 사건 각 도로부분에 대한 독점적,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.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각 도로를 점유·관리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고, 피고가 이익을 취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, 이 사건 각 도로에 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1) G은 1973. 12. 31. 이 사건 각 도로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, 1976. 5. 31. 이 사건 각 도로 중 1/3 지분에 관하여 H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 그 후 G이 2004. 3. 4. 사망하였고, G의 상속인들인 I, J, K, L, M이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2/15 지분을 상속하였다. G 및 그의 상속인들은 인근 토지 소유자들에게 이 사건 각 도로에 관한 사용료를 주장한 적이 없고, 이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. 그 후 위 상속인들의 지분에 관하여 강제경매가 개시되었고, 원고, 선정자들, 원고 보조참가인은 2012. 9. 11.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/9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2) 이 사건 각 도로는 인근 토지 소유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로 보이고, 원고 이전의 소유자들은 이 사건 각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를 주장한 바 없다.

4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태지영

별지